

# 학 생 회 칙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는 예원예술대학교 학생회(이하 "본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자율적인 학생활동을 통해 창조적 비판능력을 함양하고, 진리탐구를 통하여 사회의 총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설치)** 본회는 예원예술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4조(회원자격)**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
**제5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**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③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존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**제6조(본회의 기구)** 본회는 제2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총회, 대의원회, 여학생회, 동아리 연합회, 졸업준비위원회, 교지편집위원회를 둔다.

## 제2장 학생총회

**제7조(구성)**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생 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8조(기능)** 학생총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, 결산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는다.

② 학생총회는 회칙개정 및 회원에 관련된 중대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학생총회는 학생 정·부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.

**제9조(의장)**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. 총학생회장 궐위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맡는다.

**제10조(소집)**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①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로 한다.

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나 회원 100명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5일 이내에 소집하며 학생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 의장이 3일 이내에 소집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<개정 2007.09.01>

③ 임시총회 소집은 5일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전향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④ 본회 총회의 소집기준은 회원 5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3장 학생회

### 제1절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
**제11조(지휘)**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의장 및 운영위원회집행위원장이 된다.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
**제12조(보장)** 학생회장은 학생총회와 대의원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한을 침해당하지 않는다.

**제13조(임기)** 정·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년 학기초부터 다음 년도 차기 학생회 발대식 전까지로 한다.

**제14조(기능)** 학생회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.
2. 집행부 각 부·차장을 임명하고 대의원회에 통보한다.
3. 본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
4. 집행부 각 부·차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임명할 수 있다.
5.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이유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6.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.
7. 학생회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8.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.
9. 예원예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의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으로 추천한다.

## 제2절 집행부

**제15조(지휘)**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**제16조(구성)** 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각부 차장으로 구성한다.

**제17조(선출)** 14조 2호에 의거하여 선출한다.<개정 2012.12.21>

**제18조(기능)**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.
2. 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3. 학생회 일체의 사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4. 각 부서의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각부 산하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.
5. 집행위원회는 제반사업의 집행을 위해 기획, 총무, 홍보, 문화, 예술, 체육 섭외부 등의 부서를 둔다.

## 제4장 대의원회

**제19조(지휘)**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
**제20조(구성)** 대의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대의원회는 각 학과, 학년들이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표1인씩이 대의원이 된다.
2. 전년도 구성된 사무국 인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3. 집행위원회의 임원 및 학회장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**제21조(의장)**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원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.

**제22조(기능)**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칙개정의 심의 및 의결권
2. 학생회비 심의 확정권
3. 학생회비의 예산안 및 결산서의 심의 및 의결권
4. 운영위원회에 대한 출석 요구권
5. 집행부 임원에 대한 해임 의결권
6.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
7. 정·부학생회장의 선출 및 탄핵권
8. 각 자치기구 감사권 및 감사결과 비리 발견시 학교 당국에 그 책임자의 징계 건의권

**제23조(소집)**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① 정기총회는 매년 3·5·9·11월에 소집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의 경우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의 임의로 소집 할 수 있다.
- ④ 대의원 총회의 소집은 5일전에 공고한다. 단,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**제24조(의결)** ①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② 제22조 2·6·7·8호는 출석대의원 2/3 이상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2.12.21>

③ 제21조 1·3·4·5항은 재적대의원 1/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5장 운영위원회

**제25조(지휘)** 본회는 본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26조(구성)**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정·부회장, 여학생회장, 동아리연합회장, 교지편집위원장, 졸업준비위원장으로 구성한다.

**제27조(기능)**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회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안을 심의 조정하며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2.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.
3.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
4.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.
5. 필요한 경우 간부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

## 제6장 동아리 연합회

**제28조(지휘)** 동아리 연합회는 본교 동아리의 대표기구이다.

**제29조(구성)**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.

**제30조(회장)** 동아리 연합회장은 각 동아리 대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, 운영위원이 된다.

**제31조(기능)** 동아리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아리 자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등록사무를 담당한다.
2. 각 동아리가 주관하는 행사를 심의 조정 한다.
3. 각 사업 계획 및 예산·결산 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32조(등록)** 신규로 동아리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동아리 등록은 신규등록과 재등록으로 구분하며 매년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2. 해당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이념에 찬성하는 10명 이상의 재학생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.  
<개정2007.09.01>
3. 회원구성은 2개 전공 이상의 재학생을 회원으로 1개 전공 2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해야 한다.  
<개정2007.09.01>
4. 각 동아리는 지도교수(전임이상) 1인이상을 선정하여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## 제7장 여학생회

**제33조(지휘)** 여학생회는 본교 여학생회의 대표기구이다.

**제34조(구성)** 여학생회는 본교 전 여학생으로 구성한다.

**제35조(회장)** 여학생 회장은 본교 여학생이 선출하며 회장은 여 학생회를 대표하며, 운영위원회가 된다.

**제36조(기능)** 여학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2. 각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37조(회칙)** 기타 세부사항은 여학생회 회칙에 따로 정한다.

## 제8장 졸업준비위원회

**제38조(목적)** 졸업준비위원회는 대학생들의 보람과 추억을 보존하고 졸업 예정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39조(구성)** 졸업준비 위원회는 각 학과 4학년 대표로 구성한다.

**제4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** ① 졸업준비 위원장은 졸업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졸업준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학과 대표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된다.

③ 졸업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**제41조(기능)** 졸업준비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① 졸업준비위원회는 졸업준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졸업준비위원회는 각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42조(재정)** 졸업준비위원회의 재정은 졸업회비로 하고 졸업회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**제43조(회칙)** 기타 세부사항은 졸업준비위원회의 회칙에 따른다.

## 제9장 교지편집위원회

**제44조(목적)**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발간 및 대학언론 활동의 업무를 담당하며, 자유와 창의적인 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45조(구성)** 교지편집위원회는 본회 회원 중 응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46조(위원장)** ①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교지편집위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된다.

② 교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없다.

③ 교지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안건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에 출석 발언한다.

**제47조(기능)** ① 교지편집위원회는 교지 편집 제작 및 이에 관련되는 제반 학생 언론문화 활동을 담당한다.

② 각 사업계획 및 예산-결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.

**제48조(회칙)** 기타 세부 사항은 교지편집 위원회의 회칙에 따로 정한다.

## 제10장 선거

**제49조** 본회의 선거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선거로 한다.

**제50조(선거권)** 선거권 자는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.

**제51조(피선거권)** ① 피선거권은 선거권을 가진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자에 한 한다.

② 각 급 임원으로서 등록일전에 그 직을 사임한자.

### 1. 학생 정·부회장

가.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.00이상인 자<개정 2007.09.01>

나. 형사처벌 및 학사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

다. 회원 50명이상 추천을 받은 자<개정 2007.09.01>

### 2. 여학생 회장

가.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.00이상인 자

나. 여학생 20명이상 추천을 받은 자<개정 2007.09.01>

### 3. 대의원 의장

가.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.50이상인 자

나.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한다.

4. 동아리연합회장

가. 4학기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2.5이상인 자

나. 동아리연합회에 2회이상 등록 활동하고 징계 사실이 없는 각 동아리 대표자로서 이 대표들이 선출한다.

5. 졸업준비위원장

가. 차기년도 4학년이 될 각 학과 대표들 중에서 각 학과 대표들이 선출한 자

6. 교지편집위원장

가. 4학기 이상 등록자중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.5이상인 자

나. 편집위원들이 직접 선출한다. 단, 위 항 2·3·4·5·6 부회장 및 부의장은 회장과 의장이 임명 할 수 있다

**제52조(피선거권의 제한)** 모든 선거 관리 위원은 당해 연도 피선거권이 없다.

**제53조(선거방법)** ① 51조 1항은 공동 입후보하며 2·3·4·5·6단일후보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 경우에는 학생정·부회장 5일 이내 다른 자치기구장은 3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.

③ 모든 자치기구장은 정·부제로 한다.

**제54조(선거시기)** ① 학생정·부회장 및 여학생회 선거는 임기 년도 11월중에 실시하며 당선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임자의 보조 기능을 갖는다.

② 기타 각 자치기구의 선거시기는 각 자치기구 회칙에 따로 정한다.

**제55조(구성)** 선거관리 위원회는 대의원회의 임원진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의장이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.

**제56조(기능)** 선거관리 위원회는 학생정·부회장 및 여학생회 각 자치기구장의 모든 선거를 주관하며, 선거제반의 업무를 관할한다.

**제57조(투표 및 개표)** 투표 및 개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 3분의2이상이 관리하고, 학교 관계자 승인 하에 교내 신문방송국 기자를 입석 시킬 수 있다.

**제58조(참관인)** 각 입후보자는 투·개표장에 2인씩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.

**제59조(무효표)**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
1. 정규투표용지는 사용하지 않은 것
2. 선관위의 직인이 없는 것
3. 투표용지에 필요한 표식외의 표식이 있는 것
4. 기표선상 1/3이상 침해한 것

**제60조(이의신청)**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 후 24시간이내에 당해년도 선관위에게 재소할 수 있다.

② 전항의 재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/3이상 의결로 그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.

**제61조(당선공고)**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된 때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당선공고를 해야 한다.

**제62조(보궐선거)** ① 본 회의 각급 정부회장이 모두가 사임 및 탄핵 등으로 인하여 본 회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50일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이내에 각 학과 학년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②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③ 잔임 기간이 150일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을 두고 학교측에서 승인한다.

④ 각 자치기구장이 권위 또는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세부사항은 각 자치기구 회칙

에 따로 정한다.

## 제11장 회칙개정

**제63조(발의)** 본 회의 회칙개정은 본회회원 100명이상 학생회장 또는 재적대의원 1/30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.<개정 2007.09.01>

**제64조(의결)** 본회100인이상이 발의할 때는 본회회원 1/30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2/3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07.09.01>

**제65조(공고)** 의결된 개정안은 7일이내에 대의원 의장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부 칙(2001. 1. 1)

1. (시행일) 이 학생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학생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학생 회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학생 회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학생 회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